

제173회(임시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부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목 차

1. 재정경제국 소관 주요현안업무보고	1면
2.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취락지구) 지정에 위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5면
3. (가칭)사직2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에 위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9면
4.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현안업무보고	16면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안재홍의원 외 6인 발의)	17면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23면
6.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현안업무보고	29면

2007年 鐘路區議會 第173回 臨時會
財務建設委員會 報告資料

투명한 종로세정 건설

세무공무원 비위 사건 경과보고



종 로

財政經濟局

세무공무원 비위 사건 경과보고

□ 사건 개요

- 인적사항 : 세무2과 (2002.9.14 ~ 2006.10.10 : 세무1과)
세무7급 김 만 수 (48세) ※ 2007.3.29日 직위해제
- 혐의내용 : 공 전자기록 등 변작 및 뇌물수수
 - 2005년 및 2006년도분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부과자료중 총 18회에 걸쳐 3억4,140만원을 결재없이 세무전산을 불법 삭제 (부과취소)한 후
 - 관련 납세자 11명으로부터 도합 3,900만원을 수수한 혐의
- 구속수감 : 2007.4. 6.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
- 검찰송치 : 2007.4.13.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추가 수사중

□ 사건 경위

- 사건발단
 - 2006.7월분 취득세·등록세 374만원을 감면해주는 대가로 20만원을 수수한뒤 130만원을 추가 요구하자 국무조정실에 민원제기
 - 국무조정실에서 약 2개월간 조사한 후 추가 상세한 조사가 필요하다 하여 2007.3월 서울시 감사관 및 서울지방경찰청에 이첩

○ 우리구 수사의뢰

- 우리구는 민원내용을 인지하고 자체 특별점검반을 구성 혐의자가 처리한 5년동안 부과 취소한 전산자료 205건 5억1,500만원에 대하여 자체 점검한 결과
- 2005년도분과 2006년도분 취득세,재산세 18건 3억4,140만원을 세무전산을 불법조작 삭제(부과취소)한 것을 확인하고 2007.4.2.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의뢰

□ 전산자료 전수 자체점검

○ 다른 직원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

- 2007.4.2~4.6.까지 일주일간 서울시 지시에 의하여 25개 자치구에 대한 300만원 이상 최근 5년간 부과취소 전산자료 총 7,682건 1,296억 8,526만원 (우리구의 부과취소 자료 282건 62억 3,478만원)을 각 자치구별로 자체 조사한 결과 세무전산의 불법 조작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 그 외 서울시에서는 2007.4.10~4.11.까지 2일간 시청직원을 25개 자치구에 투입하여 300만원 이하 소규모 부과취소 전산자료 1,049건 18억1,500만원을 무작위로 발체하여 점검한 결과 유사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됨

○ 시스템상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 현 서울시 및 각 자치구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세무종합시스템과 결재 프로그램의 이원화로 인하여 결재 없이 임의로 부과취소 입력이 가능 하도록 돼 있어,
- 현 이원화된 시스템에서는 결재없이 무단 삭제(부과취소) 할 경우 결재의 주요기능인 내부 통제가 불가능 하여 문제점으로 대두됨

□ 조치사항 및 재발방지 대책

○ 혐의자가 부과자료를 불법 삭제(부과취소)하여 징수하지 못한 18건 3억4,140만원에 대하여

- 2007.3.15 및 4.3일에 내부방침을 수립하고 원상 복구하여 체납으로 관리 하면서 2007.4.13일 독촉 하였으며

○ 금번 발생한 지방세 관련 비리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 세무종합시스템의 ID 관리체계를 세분화하여 통제·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자기검증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전산시스템상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하도록 서울시에 건의 하였으며,
- 부과취소 해야 할 경우 반드시 최종 결재가 있어야만 전산 수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내부통제 기능이 가능 하도록 개선 할 계획임